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6
----------	-----

제출년월일 : 2000. 8.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하고, 계약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규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수입증지판매인의 지정을 계약제로 변경함(안제8조)

나. 판매인 지정신청 시 신청서에 관계증빙서(인감계 및 위치도) 첨부사항 폐지(안제10조)

다. 판매인의 의무사항 중 증지판매 보유량 의무 폐지(안제11조)

라. 판매인의 변동사항 신청서 제출 의무 삭제(안제12조)

마. 판매인의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변경됨에 따라 판매인 지정취소 요건 삭제(안제14조)

바.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의무 삭제(안제16조)

사. 장부비치 의무 및 검사 조항 삭제(안제28조)

아. 별지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제2호·제6호·제8호·제9호 서식은 삭제하고자 함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목 “판매인 지정”을 “판매인 계약체결”로 하고 제1항중 “지정한”을 “계약체결한”으로, 제2항중 “증지판매인을 지정”을 “증지판매 계약체결을”로 하며 제3항중 “판매인을 직장금고로 지정하였을 경우”를 “직장금고와 증지판매계약 체결을 하였을 경우”로 한다.

제10조제목 “판매인 지정신청”을 “판매인 계약체결 신청”으로 하고, 제1항중 “판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을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으로 “지정신청서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를 “계약체결 신청서를”로 “지정은”을 “계약체결신청은”으로 하며

제2항중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성명, 판매소의 위치, 증지교부를 받을 시명을”을 “판매인과 계약체결을 하였을 때에는 성명, 판매소의 위치등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로 하고

제3항중 “판매인을 지정한 때에는”을 “판매인과 계약체결한 때에는 신규계약, 해지등 판매인과의 계약 변동사항에 대하여”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를 “증지판매업무에 관한”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중 “제8조제4항에”를 “제8조제3항에”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별지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제2호·제6호·제8호·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 받은 자가 계속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공포 후 3월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소관 실·과·소		세 무 과 ☎ 940-4298
입 안 자	세 무 과 장	석 명 범
	세외수입담당	사 미 영
	담 당 자	권 상 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판매인 지정) ①증지는 시장, 보건소장, 출장소장, 읍·면·동장이 <u>지정한 판매인</u>(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 또는 보건소장, 출장소장, 읍·면·동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격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u>중지판매인을 지정</u>하여야 한다. ③판매인을 직장급고로 지정하였을 경우 직장급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판매인 계약체결) ①----- ----- <u>계약체결한</u> ----- ----- ② ----- ----- <u>중지판매 계약체결을</u> ----- ----- ③ <u>직장급고와 중지판매계약 체결을 하였을 경우</u> ----- -----
제10조(판매인 지정신청) ①판매인지정을 받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u>지정신청서</u>에 <u>관계증빙서류</u>를 첨부하여 시 본청에 대한 판매인 <u>지정</u>은 시장에게, 기타의 판매인 <u>지정</u>은 보건소장, 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시장, 보건소장, 출장소장, 읍·면·동장은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성명, 판매소의 위치, 중지교부를 받을 시명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③보건소장, 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이 판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인 계약체결 신청) ①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u>계약체결 신청서</u>를 시 본청에 대한 판매인 <u>계약체결신청</u>은 시장에게, 기타의 판매인 <u>계약체결신청</u>은 ----- ----- ② ----- 판매인과 계약체결을 하였을 때에는 성명, 판매소의 위치등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 ③ ----- 판매인과 계약체결한 때에는 신규계약, 해지등 판매인과의 계약 변동사항에 대하여 -----
제11조(판매인의 의무) ①(생략) ②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인의 의무)①<현행과 같음> ②판매인은 <u>중지판매업무</u>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12조(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①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10일전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 보건소장, 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인 중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수입중지 판매인 지정서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 보건소장, 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삭제>
제13조(판매소의 위치) 중지판매소는 민원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내에 중지판매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금고는 제8조제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	제13조(판매소의 위치) ----- ----- ----- 제8조제3항에 ----- -----
제14조(지정의 취소)①시장·보건소장·출장소장·읍면동장은 판매인으로부터 폐지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지정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보건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은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정의 취소)<삭제>
제16조(판매 또는 관계인신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인이나 기타관계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판매인이 판매장소(주소지)를 변경하였을 때 2. 판매인이 사망한 때 3. 판매인이 30일이상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소가 불명할 때 4.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때	제16조(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삭제>

